

제 4 장 의료·사회보험



사이타마현의 마스코트 코바톤

- 1 의료보험제도
- 2 국민건강보험(지역보험)
- 3 건강보험(피고용자보험)
- 4 특정건강진단
- 5 암검진
- 6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 7 개호보험
- 8 의료기관 안내
- 9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방법
- 10 입원
- 11 성년 후견 제도

1 의료보험제도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병이나 부상에 대비해서 사전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사용하여 필요한 의료(급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는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의료보험에는 회사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75 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가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3 개월이 넘는 체류기간을 받아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3 개월 넘게 일본에 체류할 것이 명확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회사나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및 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쿄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과 특정 직종의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조합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1) 가입신고

도쿄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거주지의 시청 (사이타마시는 구청) 또는 지방행정 사무소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서 가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조합에 가입하려면 각 조합 담당 창구에서 가입 신고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료(세)

보험료(세)는 세대별로 인원수와 전년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연도별로 부가되는 보험료(세)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40 세부터 65 세 미만의 사람이 있는 세대는 이것에 간호납부금 분의 보험(료)세가 가산됩니다. 요율(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 국민건강보험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세)는 연도분을 복수의 납기 별로 나누어서 시(구)청 또는 지방행정 사무소,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합니다.

(3) 마이나 보험증,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은 세대별로 가입하며, 신고 및 보험료(세금) 납부는 세대주가 실시하지만, 가족 전원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 보험증 이용 등록을 한 사람은 병원에서 「마이나 보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이 가입했을 때 자격정보 안내가 교부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증의 이용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증(종이로 된 보험증)에 적혀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 중에 피보험자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피보험자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가 신청하지 않아도 교부 받습니다. 병원 등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을 때에 마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병원 등의 접수창구에 있는 카드리더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피보험자증이나 자격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 등의 접수담당자에서 보여주십시오.

또한 2024 년 12 월 2 일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증 발급은 안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때는 지방행정 사무소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 또는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조합에 신고해 주십시오.

- ① 다른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 또는 탈퇴했을 때
- ② 전출, 전입했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 ⑤ 주소나 세대주, 성명이 바뀌었을 때
- ⑥ 75 세 이상이 되었을 때
- ⑦ 유효기간 내의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를 분실했을 때

※마이나보험증을 분실했을 때는 주소지 관할 관청에 연락하십시오.

(4) 급부내용

- ① 의료비: 병원 등에서 마이나 보험증이나 유효기간 내의 피보험자증, 자격확인서 등을 보여주고 진찰과 치료를 받을 때는 그 의료비의 3 할(의무교육 취학 전 2 할, 70 세 이상 2 할 또는 3 할)을 자신이 지불합니다.
나머지는 보험으로부터 병원 등에 지불됩니다.
- ② 출산육아 일시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급됩니다.
- ③ 장례비: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장례를 치렀을 때 그 비용의 일부로서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 ④ 고액요양비: 의료기간에 지불한 한 달치의 청구 부담액이 일정액을 넘었을 때 초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⑤ 요양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거주지 지역 관할 관청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 신청해서 인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돌려 받게 됩니다.
 - 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이나 보험증을 안 가지고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경우
 - 나. 수혈을 받았을 때(혈액비)
 - 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용장비(코르셋 등)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 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마·침·뜸·마사지 시술을 받았을 때
 - 마. 골절·염좌 등으로 유도 접골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
 - 바. 해외도향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일본 국내에서 의료기관에 갔을 때에 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5)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건강진단, 예방접종, 미용성형, 치열(치아의 배열)교정, 정상출산의 비용, 업무상의

부상이나 병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나 보험증은 사용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지방관청 국민건강보험 담당과, 또는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조합에 문의해 주십시오.

3 건강보험(피고용자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그 가족이 가입하는 보험제도입니다.

(1) 보험료

보험료는 급여(수당 등을 포함), 상여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표준보수 월액, 표준 상여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 금액을 사업주와 피보험자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피보험자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급여, 상여에서 공제함으로서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지불합니다. 또한 40 세이상 65 세 미만인 피보험자는 이에 개호보험료가 가산됩니다.

(2) 급부내용

- ① 의료비: 병원 등에서 마이나 보험증이나 유효기간 내의 피보험자증, 자격확인서 등을 보이고 진찰 및 치료를 받을 때는 그 의료비의 3 할(의무교육 취학 전은 2 할, 70 세이상은 2 할에서 3 할)을 본인이 지불합니다. 나머지는 보험자로부터 병원 등으로 지불됩니다
- ② 출산육아 일시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급됩니다.
- ③ 매장료: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해서 장례식을 치렀을 때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 ④ 고액요양비: 의료기관에 지불한 1 개월의 창구부담액이 일정액을 넘었을 때, 초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⑤ 요양비: 부득이한 이유로 대신하여 대금을 치렀을 때, 치료용 도구를 만들었을 때 등에 보험자가 인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⑥ 상해질병수당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 급여를 받지 못할 때에, 대략 급여의 3 분의 2 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 ⑦ 출산수당금: 임신 4 개월(85 일) 이상으로 출산 때문에 일을 쉬어 급여를 받지 못할 때, 출산 전·후의 일정 기간에 대략 급여의 3 분의 2 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3)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건강진단, 예방접종, 미용성형, 치열(치아의 배열)교정, 정상출산의 비용, 업무상・

출퇴근 중의 부상이나 병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은 사용 못합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치료의 경우에는, 먼저 보험자(전국건강보험협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상담창구 ·문의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접수시간
전국건강보험협회 사이타마지부 (협회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대표) 048-658-5919 자동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니시키초 682-2 오미야정보문화센터 (JACK오미야)16층	월~금 8:30~17:15 (공휴일 및 12/29~1/3 제외)
기타 (건강보험조합 · 공제조합 등)	전화번호와 주소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있는 각 보험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4 특정건강진단

의료보험에서는 40~74 세의 가입자(해당 연도 중에 40 세가 된 사람을 포함)를 대상으로 특정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고 있는 각 보험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는 35~74 세의 피보험자(본인)(해당 연도 중에 35 세가 된 사람을 포함)를 대상으로 한 생활습관병 예방건강진단과 40~74 세의 피부양자(가입자 본인에게 부양 받고 있는 가족)(해당 연도 중에 40 세가 된 사람을 포함)를 대상으로 한 특정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고 있는 각 보험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5 암검진

암검진은 정기 건강진단과는 별도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암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분은 거주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 50 세 이상의 남녀(2 년에 1 회)

- 폐암 - 40 세 이상의 남녀(1 년에 1 회)
- 대장암 - 40 세 이상의 남녀 (1 년에 1 회)
- 자궁경부암 - 20 세 이상의 여성 (2 년에 1 회)
- 유방암 - 40 세 이상의 여성 (2 년에 1 회)

암검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pref.saitama.lg.jp/a0705/gantaisaku/gankenshin-city-madoguchi.html>

6.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75 세 이상(일정의 장애가 있고 사이타마현 후기 고령자 의료광역연합에서 인정을 받은 65 세 이상의 사람을 포함함) 인 사람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일본의 국적을 소유하지 않고 ①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규정된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②3 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③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④입국 시점에서 의료를 받는 목적으로 체류하게 된 사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가 됩니다.

(1) 가입 신고

마이나 보험증을 가진 분은 75 세가 된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에게는 75 세가 되었을 때 또는 사이타마현 내에 전입했을 때, 원칙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격확인서가 배송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보험료

보험료 금액은 모든 가입자가 균일적으로 부담하는 균등할액과 소득 금액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할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경감조치 있음). 요율은 원칙적으로 사이타마 현내에서 동일합니다.

(3) 마이나 보험증, 자격확인증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증의 이용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증(종이로 된 보험증)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 중 곧 75 세가 되는 분이나 피보험자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피보험자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확인증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받게 됩니다.

병원 등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을 때에 마이나 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병원 등의 접수창구에 있는 카드리더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피보험자증이나 자격확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병원 등의 접수 담당자에게 보여주십시오.

또한 2024년 12월 2일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증은 발급받을 수 없으나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급부 내용

① 의료비: 병원 등에서 마이나 보험증이나 유효기간내의 피보험자증, 자격확인증을 제시하고 진료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비의 1할(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에 따라 2할 또는 3할)을 자신이 지불합니다. 나머지는 보험으로부터 병원 등에 지불됩니다.

② 고액 요양비: 의료기관에 지불한 1개월 간 창구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③ 요양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 관할 행정관청의 후기 고령자 의료 담당과에 신청하여야 소용된 비용에 대해 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됩니다.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마이나 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수혈을 받은 경우 (혈액비)

다 의사가 그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용 장비 (코르셋 등)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

라 의사가 그 필요하다고 인정한 침·뜸·맞사지의 시술을 받았을 때

마 골절·염좌 등으로 유도 접골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

바 해외여행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일본국내에서 의료기관에 갔을 때에 상응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④ 장례비: 가입자가 사망해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비용의 일부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5) 보험급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와 동일입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지방관청의 후기 고령자 의료 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호보험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합니다. 65 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과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40 세이상 64 세미만인 사람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재류기간이 3 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3 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관할 관청의 개호보험 담당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1) 보험료

- ① 65 세 이상 되는 사람의 보험료는 살고 있는 지방관청과 소득 상황 등에 의해 금액이 다릅니다.
- ②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40 세 이상 64 세 미만 사람의 보험료는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의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2) 요개호인정신청

개호보험에 의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 어떤 지의 인정(요개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개호 인정의 신청은 관할 관청의 개호보험 담당창구에 가서 신청해 주십시오.

(3) 급부내용

요지원 또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에게 그 정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개호 상태에 따른 이용 상한액의 설정 등이 있으므로, 개호지원전문원 (케어 매니저)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① 재택서비스(자택에서 헬퍼 등의 방문을 받는 서비스, 자택에서 시설에 다니며 받는 서비스, 시설에 숙박하며 받는 서비스, 자택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서비스 등 주택을 개수하는 비용의 보조 등)
- ② 시설서비스(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 보건시설, 개호의료원 등에 입소하여 받는 개호서비스. 원칙적으로 요지원인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지역밀착형 서비스(가능한 익숙한 동네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서비스)

(4) 이용자의 부담

개호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의 1 할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 할 또는 30 할)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8 의료기관 안내

(1) 의료정보넷

인터넷에서 전국의 병원, 진료소, 치과진료소, 조산소, 약국을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어 대응 가능한 병원 등에 대해서도 언어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자동번역기능.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한국어).

의료 정보넷(나비이)

URL: <https://www.iryuu.teikyouseido.mhlw.go.jp/znk-web/juminkanja/S2300/initialize>

(2) 사이타마현 구급전화 상담

(①소아 구급 전화상담, ②성인구급전화상담, ③의료기관안내)

긴급한 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아래 상담창구로 전화해 주십시오. (일본어로 대응합니다.)

【전화번호】 #7119 또는

048-824-4199(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인접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다이얼회선, IP 전화, 히카리 전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이전과 같이, #8000 또는 048-833-7911(어린이 상담)에서도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시간】

24 시간 365 일

【이용방법】

음성 메시지에 따라, 상담할 사항의 창구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어린이 상담(소아 구급 전화상담)
- ② 성인상담 (성인구급 전화상담)
- ③ 의료기관 안내 (어린이, 성인에 대응합니다.)

※③의료기관 안내를 이용하실 경우 당부 말씀

- 치과, 구강외과, 정신과는 제외합니다.
- 의료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내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에 대해 안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분, 음성이나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은 의료기관안내

의뢰서에 내용을 기입한 후 전용 팩스 fax 048-831-0099(일본어대응)로 보내주십시오. 의료기관안내 의뢰서는 사이타마현 홈페이지의 「사이타마현 구급 전화상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3)사이타마현 AI 구급상담

긴급한 병이나 부상의 경우, 병원에 가야 할 지 망설여질 때는 「사이타마현 AI 구급상담」을 활용하십시오. (일본어상담만 가능)

URL: <https://www.pref.saitama.lg.jp/a0703/aikyukyu.html>

9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방법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의사의 진찰을 받고자 할 때는 가까운 진료소나 병원을 찾아가십시오.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진찰을 받았던 의사에게서 소개장을 받아, 설비가 갖추어진 병원을 찾아 갑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인 큰 병원으로 소개장 없이 찾아 가면, 보통 진료비 이외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1) 접수창구에서의 수속

접수창구에서의 수속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이하를 참고하십시오.

- ① 건강보험증을 신규환자 접수처에 제출해 어느 과의 진찰을 받고 싶은 지 전달합니다.
- ②안내에 따라 진료과로 갑니다.
- ④ 진찰과의 접수처에서 접수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간호원에게 건네 주고 진찰 순서를 기다립니다.
- ④진찰이 끝나면 회계창구에서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 ⑤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으면, 병원 약국에서 약을 받거나 또는 병원 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내고 약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0 입원

병실에는 개인실, 4인실, 6인실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입원비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환자의 희망으로 개인실 등의 특별한 방을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가산되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11 성년 후견 제도

성년 후견 제도는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분(여기서는 '본인'이라고 한다)에 대해 법률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지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나누면 법정 후견 제도와 임의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1) 법정 후견 제도

① 개호보험·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 예금 및 재산의 관리, 비용의 지불 등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 혼자서 실시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에, 가정 법원에 '신청'하고 지원할 사람을 선임합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에 따라 '보조(호조)' '보좌(호사)' '후견(고우켄)'의 3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호조)	보좌(호사)	후견(고우켄)
본인의 판단 능력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통상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을 지원하는 사람	보조인 (호조닝)	보좌인 (호사닝)	성년 후견인 (세이넨 고우켄닝)

② 가정법원에서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사촌내의 친족, 검찰관, 행정관청장 등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지부, 출장소 포함)에 합니다(※).

(담당하는 가정 법원을 모르는 경우는, 가까운 가정 법원에 문의해 주세요.)

URL: <https://www.courts.go.jp/saitama/saiban/madoguti/index.html>

③상담 창구

• 각 거주지 관할관청 담당과, 또는 「성년 후견 센터」 등의 상담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각 관할관청의 연락처는 사이타마현 지역 포괄 케어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URL: <https://www.pref.saitama.lg.jp/a0609/3-seinen-kouken/3-seinen-kouken-senmonsyoku-soudan.html>

④ 수속 안내

• 사이타마 가정 법원 후견 사이트

URL: <https://www.courts.go.jp/saitama/saiban/tetuzuki/kouken/index.html>

(현청을 방문 또는 전화의 경우는, ②의 가장 가까운 가정 법원에 문의해 주세요.)

※후견 등 개시의 심판의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분이어도 일본에 주소·거소를 가질 때는 일본의 법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헤이세이 18 년 법률 제 78 호) 제 5 조】 .

(2) 임의 후견 제도

본인에게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본인이 선택한 사람에게,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때에 대신 해 줄 것을 미리 계약(임의 후견 계약)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했을 때에, 가정 법원에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의 「신청」을 실시해,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 받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① 「임의 후견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본인의 주소에 가까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 증서」에 의해 체결합니다.

② 가정법원에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사촌내의 친족, 임의 후견수임자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지부, 출장소 포함) 대하여 실시합니다.

(담당하는 가정 법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가까운 가정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URL: <https://www.courts.go.jp/saitama/saiban/madoguti/index.html>

※외국인을 본인으로 하는 임의 후견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원에서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의 신청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②의 가장 가까운 가정 법원에 문의하십시오.